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

소관부서 : 공학교육혁신센터 1527~8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68조에 근거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그램)

전산전자공학부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 컴퓨터공학 심화 프로그램과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개정 2010. 12. 28)

제3조 (프로그램 운영)

- ① 전산전자공학부는 각 전공 내에서 인증프로그램과 복수전공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8)
- ② 인증프로그램과 복수전공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제증명서 상의 전공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개정 2010. 12. 28)
- ③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PD(Program Director)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 프로그램위원회를 각 프로그램 내에 둔다.(개정 2009.8.17)
- ④ 각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별 내규을 각 프로그램별로 정한다.(개정 2012.11.7)
- ⑤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각 인증프로그램은 MSC(수학 및 기초과학 등) 및 전문교양교과목 관련 제도 및 운영을 공학기초교양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12.28)

제4조 (인증대상 및 참여)

- ①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 8. 17)
- ②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 신청은 07학번 이후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06학번 이전 학생은 2011년 2월 이후 졸업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8. 17)
- ③ 등록학기가 1학년 1학기인 학생은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로 신청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의 전 1입절차를 따른다.

제5조 (졸업)

- ① 인증프로그램에 소속된 자는 학칙 제 47조 2의 졸업요건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공학교육 인증 교과목(전문교양, MSC(수학 및 기초과학 등),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영역별 최소이 수학점은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 ② 각 프로그램위원회는 제1항 이외에 별도의 인증이수요건을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전입)

- ① 전입(재입학, 편입학, 복학, 전과)생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공학교육인증 과정 참여/포기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PD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7)
- ② 이수허가를 받은 전입생은 제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공학인증에 따른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③ 전입생이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인증 교과목 인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각 인증프로그램별 내규에서 정한다.(개정 2012.11.7)

제7조 (인증포기)

- ① (삭제 2011. 10. 31)
- ② 인증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 과정 참여/포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4학년 진학 전까지(3학년 2학기 종강 1개월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속학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학칙 제 21 조 2에 따라야 한다.)
- ③ (삭제 2011. 10. 31)

제8조 (교육과정)

- ① 전문교양,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목의 학습성과는 모든 인증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지정하고 이 학습성과의 설정과 변경은 공학기초교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 12. 28)
- ③ 전공 교과목의 선수과목 체계는 각 인증프로그램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하고, MSC 및 전문 교양 교과목의 선수과목 체계는 공학기초교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2009년 2학기부터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선수과목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수과목 수강 가능 여부를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은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기타)

PD회의, 공학기초교양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전 공학교육인증에 참여를 신청한 학생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 ③ (제증명 표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과 같이 제증명을 표기함에 있어 학위기 및 졸업증명서는 2011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하고,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이 세칙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06학번 이전 학생 중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2011년 2월 전에 졸업 또는 재적할 때에는 별표와 달리 표기 할 수 있다.